

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시대를 열다... 민선9기 첫 업무협약 체결

- 22일(수), 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2일(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도(도지사 추미애)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중앙-지방 간 본격적인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갖추고자 이뤄진 것으로, 민선9기 출범 이후 노동 분야 첫 협력 사례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제조·건설 등 산업재해 위험 업종과 영세사업장이 밀집하여 예방감독 수요가 크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20 대 정책제안 중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으로 제시했으며, 최근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 명 채용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감독 전담 조직 및 인력을 준비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노동부는 법령·지침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전산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 실무를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김영훈 장관과 추미애 지사는 전문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노동안전지킴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감독 안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훈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30 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여 민선 9 기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였다.

김주영 의원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감독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국회도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고용노동부-경기도 감독권한 지방위임 업무협약식 등 개요
2. 「공동협약서」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류한석	(044-202-7826)
		담당자	주무관	원동영	(044-202-7825)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강승훈	(044-202-8914)



① 추진 배경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12.8.) 및 민선9기 출범에 따라 감독권한 지방위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② 개요

- (일시·장소) '26.7.22.(수) 15:30~, 경기지방고용노동청(신관 4층 중회의실)
- (참석자)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2), 근로감독정책단장, 경기청장 등
 - (경기도) 도지사, 노동국장, 노동정책과장, 노동안전과장, 마을노무사, 노동안전지킴이 등
 - (전문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 (주요 내용) ① 감독권한 지방위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② 지방정부 노동감독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간담회

③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5:30	15:35	'5	· 환담	신관4층 소회의실
15:35	16:00	'25	· 업무협약 체결 * (순서) 개회사, 국민의례, 인사말(장관, 도지사), 축사(영상, 김주영 의원), 업무협약식(서명 및 사진 촬영), 폐회	신관4층 중회의실
16:00	16:30	'30	· 현장 간담회 * 노동부 및 경기도 관계자, 전문가, 경기도 마을 노무사 및 노동안전지킴이, 경기노동청 감독팀장 등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경기 지역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간 노동감독 협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를 모범적인 ‘노동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전 준비 및 협력) 양 기관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1. 경기도는 노동감독권한 위임을 대비하여, 조직·인력·교육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 고용노동부는 중앙-지방 합동점검 등을 통해 예방 감독 관련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제 3 조(경기도의 역할)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준비 및 담당 인력 지정
2. 경기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시행
3. 노동감독과 연계하여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 추진

제 4 조(고용노동부의 역할) 고용노동부는 경기도가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노동감독 및 노동안전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노동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추진
2.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감독업무 관련 지침 제공 등 실무 지원
3. 제도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제 5 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보완한다.

제 6 조(신의성실)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하며,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합의한다.

제 7 조(효력)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상호 합의 없이는 파기되지 아니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김 영 훈



경기도지사 추 미 애